

상품요약서

(조립공제 - 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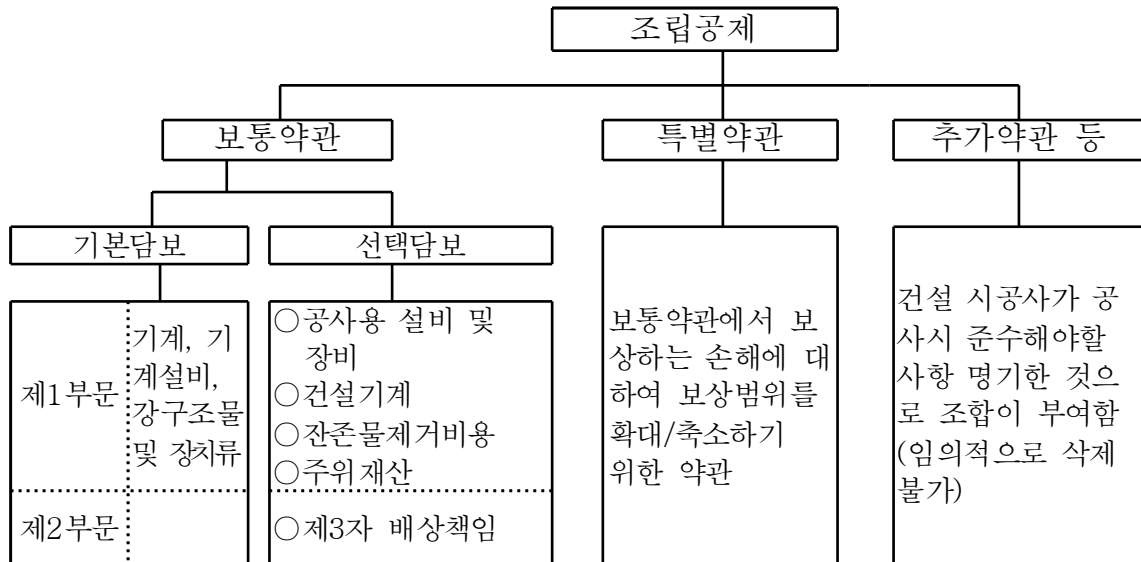
1. 상품개요

조립공제는 발주자, 시공자 및 기타 공사관계자가 시공 중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 등에 발생한 물적손해와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상하는 상품

2. 약관구성

□ 약관구성 = 보통약관(국문) + 추가약관 + 특별약관 + 추가특별약관

※ 특별약관(추가약관 등 포함) 34개 첨부



※ 조립공제는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전위험 담보(All Risks)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상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일부 위험은 특별약관을 첨부한 경우에 보상 가능

3. 주요 담보내용

가. 보통약관 : 조립공제 보통약관(국문)

1) 기본담보

○ 공제목적물에 입은 물적손해 담보

- 공사의 목적물(본공사), 공사용 재료(기계, 기계설비), 강구조물 및 장치류 등

2) 선택담보 : 계약자의 선택

□ 제1부분 : 재물손해조항

○ 건설설비 및 장비(Construction Plant & Equipment)

- 가설건물, 작업준비시설, 골재 및 콘크리트 혼합설비 기계, 전기 및 급수설비, 작업도구 및 공구, 가교, 연료 등
- 똑같은 종류, 똑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의 조달가액(New Replacement Value)으로 공제에 가입

○ 건설기계(Construction Machinery)

- 크레인, 굴착기, 불도저 등 도급업자의 소유이든 임차사용이든 관계 없이 부보되며, 일반도로용 차량(자동차 및 6종 중기)은 제외
- 똑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의 신품금액(New Replacement Value)으로 공제 가입

○ 잔존물제거비용(Costs for Clearance of Debris)

- 건설공사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로 인한 잔해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제거하는데 발생한 비용
- 사고발생시 잔존물을 제거하는데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예상되는 제거비용을 별도로 설정

○ 주위재산(Surrounding Property)

- 공사장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한 피공제자(발주자, 도급업자 등)의 소유, 보호, 관리 하에 있는 재물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립작업의 결함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취급상의 잘못 또는 악의 .화재, 파열 또는 폭발 .전기적 현상 .도난 .지면의 내려앉음, 사태, 암석붕괴 .폭풍우, 홍수, 벼락, 수해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지는 물체 .위 이외의 공제의 목적에 생긴 사고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설계, 구조, 재질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입은 손해 .마모, 침식, 산화 또는 이와 비슷한 손해 .재고조사를 할 때에 발견된 손해

□ 제2부분 : 제3자 배상책임조항

◦조립공사를 하는 중에 공제의 목적인 조립공사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

◦보상의 범위

-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손해방지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공제료. 그러나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함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의 해결과 관련하여 조합의 요구에 따

르기 위해 지출한 비용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조립공사와 관련된 공제 목적의 수리 또는 개선비용
- 도급업자, 발주자 또는 조립공사에 관련된 자의 고용인과 그들 가족의 상해 및 질병
- 도급업자, 발주자 또는 조립공사에 관련된 자 또는 이들의 고용인들에게 속하거나, 보관, 보호 또는 관리하에 있는 재산의 손해
- 일반도로용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사고
- 피공제자의 계약상 가중된 배상책임
- 작업과 관련된 소음으로 생긴 배상책임
- 배수 또는 배기로 생긴 배상책임. 그러나 급격하고도 돌발적인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은 그러하지 아니함

나. 주요특별약관

□ 보통약관상의 담보위험을 일부 확장 또는 제한하거나 일부 공제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특별약관 첨부여부에 따라 동일위험에 대하여 다른 공제요율이 산출될 수 있음

- 조립공제에서는 주위재산담보가 특별약관이 아닌 제1부문의 선택사항이며,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 첨부 없이 보통약관 상에서 담보

주요 특별약관	주요 담보내용
동맹파업, 폭동 및 민중봉기로 인한 손해 특별약관	동맹파업이나 소요, 폭동 등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시공중인 공사목적물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보상
유지담보 특약	공사시공자가 공사종료 후 하자보증의무에 따라 하자보수 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 보상
확장유지담보 특약	.공사시공자가 공사종료 후 하자보증의무에 따라 보수 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보상 .공사시공중에 사고원인이 있었음을 조건으로 하여 하자보증기간내에 발생하는 사고보상

주요 특별약관	주요 담보내용
특별비용 담보특약	손해복구 촉진을 위해 발생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급행운임(항공운임 제외)담보
제작자결함담보 특별약관	공제의 목적의 설계, 주조, 재질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인하여 결함이 없는 다른 공제의 목적물이 입은 손해 보상
건설 및 조립용 기계 특별약관	건설 및 조립장비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본 상품 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제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